

# 야영장 안전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Safety Standards of Campsites

정은정\*

Chung, Eun-Jung

### Abstract

*Responding to the casualties resulting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amper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Government Joint Strengthening Safety Policy for Campsites" with a regulatory focus. While the policy is meaningful in that individual safety management laws are now integrated, it is doubtful whether it reflects the reality considering the current camping environments in Korea. For example, as heating inside tents is inevitable considering the weather and locations of campsites, the prohibition of tent heating seems too restrictive and is likely to meet objections of the camp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problems of campsite regulations and find the ways to improve the policy by reflecting realit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major campsit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more reasonable to allow individual heating using fuels suitable to each field rather than prohibiting heating in a tent, and to purchase fan systems or initiate rating usage. Continuous studies in this area will help develop the relevant rules that promote the system.*

**주제어** : 현재캠핑환경(current camping environments), 잠재적위반자(potential offenders), 현실의 반영(reflect the reality), 개별난방연료 허용(allowing individual heating using fuels)

## I. 서 론

캠핑이나 하이킹, 스쿠버와 같이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의 경우 장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최연화 · 정찬인 · 이승곤, 2015). 특히 자연감상 및 일상탈출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야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ohd, Yaman, Keat & Wai, 2005). 즉 이용객들은 점차 수동적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친화적인 기회를 찾고 있으며(이관표 · 권상미, 2013), 캠핑산업은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김학준 · 이동환, 2016). 그러나 국내 야영객 수의 큰 폭의 증가와 더불어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1) ‘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각 개별법에 의해 혼재되어 있던 안전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교차를 고려할 때 야영장에서 숙박할 수 있는 일자는 한정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에 의하면 텐트 안에 개별 난방기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야영 가능일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지 중심의 규제 정책은 난방기구 사용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관련업계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이용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야영장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야영장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야영형태의 특성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여러 개별법<sup>2)</sup>에서 각기 야영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이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개별법들에서 야영장 업은 각 주요시설을 위한 (편의)부대시설중 하나로서 운영 중이었으며, 의의 및 설치기준 등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 및

1)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 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등을 말한다.

2) 국내 야영장은 「관광 진흥법」의 ‘일반야영장’ 외에 「청소년활동증진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야영장,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시설’로서 ‘숲속야영장’과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원지휴양시설’로서, 야영장 및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휴양 및 편의시설’로서의 야영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기준<sup>3)</sup> 중 안전 기준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II. 야영장업 주요내용

### 1. 국내 야영장업 현황

#### 1) 국내 야영장업의 정의 및 범위

‘야영장업’이란 일반야영장업의 하나로서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sup>4)</sup> 한편 우리나라는 야영장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관부처별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야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국내야영장업 근거 규정

| 관계법령           | 입법목적                                                                                                            |
|----------------|-----------------------------------------------------------------------------------------------------------------|
| 관광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자연공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국토계획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 : 각 해당법령 참조

3) 화재·전기·가스·도로·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기준을 말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야영장업  
1) 일반 야영장 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편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과 관련하여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화재·전기·가스·도로·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각시설과 관련하여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sup>5)</sup>

〈표 2〉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 구분    | 적용근거                                                        |
|-------|-------------------------------------------------------------|
| 화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 전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 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br>고압가스 안전관리법<br>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도로    | 도로법                                                         |
| 급수시설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 국내 야영장업 주요연혁 및 시장규모

‘야영장업’은 2014년 10월 28일 처음 제도권(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편입되었다.<sup>6)</sup> 이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야영장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비로서 ‘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에 대한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이 마련되었다.<sup>7)</sup> 그러나 이후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야영장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자 「관광진흥법」에 규정<sup>8)</sup>되기에 이르렀다. 당해 개정을 인하여 야영장업 등록자에게 안전·위생기준 의무<sup>9)</sup>가 부과되었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5)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7) 대통령령 제25674호, 2014.10.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8)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9)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정<sup>10)</sup>되는 등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안전이 개선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전국 야영장 수는 1,917개소이며, 이는 ‘등록야영장’ 1,251개소(65.3%), ‘등록가능 야영장’ 400개소(20.8%), ‘등록곤란 야영장’ 224개소(11.7%), ‘자진폐쇄 야영장’ 42개소(2.2%)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등록가능 야영장’은 시설 보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을 말하는데, 영업을 중단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 2. 주요국 야영환경 실태

### 1) 주요국 야영환경

미국은 1920~30년대 사이에 조직된 캠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캠핑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Bultena & Taves, 1960). 이후 오일쇼크와 불황에 의해 캠핑 붐이 가라앉았으나 최근 다시 호황을 맞고 있으며, 캠핑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Brooker & Joppe, 2014). 전통적으로 공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캠프장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와 통나무로 간소하게 만든 투박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사설 캠핑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ooker & Joppe, 2014). 미국의 야영장들은 기후에 따라 보통 연중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Brooker & Joppe, 2014), 미국 캠핑장의 약 60%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아리조나, 텍사스의 5개 주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강원발전연구원, 2013)

California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ORGANIZED CAMPS 에서는 캠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캠프시설은 사업이 시행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단체 야외활동 경험을 위한 5일 이상 또는 1분기 이상의 사회적, 정신적, 교육적, 행사활동 시설들을 통칭한다.

캠프시설을 구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캠프시설은 한시적인 지역이 아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10)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캠프시설은 잘 구비되어 운영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캠프시설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완비된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캠프시설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캠프시설의 사업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주된 캠프시설의 활동은 야외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스포츠 활동에 관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대여 또는 임대 시설과 완비되지 않은 레크레이션(오락) 활동은 캠프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YMCA, YWCA, 전미 걸 스카우트 연맹, 전미 보이 스카우트 연맹, 캠프파이어, 구세군 등의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캠프시설은 전형적인 캠프시설로 지칭된다. 그리고 이하에서 나열하는 단체들에 가입한 회원들은 캠프시설로서 지위를 갖는다.

- a. 전미 캠프 연합 또는
- b. 기독교 캠핑 국제연맹 또는
- c. 자립적 캠프시설 서부 연합 또는
- d. 친환경적 야외활동 교육 사업체 연합 또는
- e. 기타 유사한 캠핑 관련 협회 및 연합

일본은 1800년대 후반 서양의 교육 문화를 모방하면서 자유 교육 형태의 일환으로 서양의 스포츠가 도입되었고, 이 때 캠핑도 그 중 하나로 소개되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여가 활동으로서 캠핑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캠핑 인구가 1,580만 명에까지 절정을 이뤘으나 거품 경제와 고베 대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캠핑 인구가 급속히 감소해 2010년에는 73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sup>11)</sup> 하지만 최근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잡지 등과 같은 미디어에서 캠핑과 관련 문화를 주목하고, 여성 아웃도어 잡지 란도네(randonnee)가 2009년 6월에 창간되고 아웃도어 의류가 패션화되는 등 여성 참가자의 캠핑 유도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가 증가되면서 캠핑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강원발전연구원, 2013). 일본의 캠핑장 대부분은 공공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관광공사에서는 영어로 일본 북쪽에서 남쪽까지 8개 지역<sup>12)</sup>에 위치해 있는 주요 캠프 사이트들의 안내 리스트(주소, 위치, 가격, 접근성, 주요 시설 및 활동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일본 내 위치하고 있는 2천여 개 이상의 캠핑장을 찾아 볼 수 있다(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2014).

캐나다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주립, 사설로 구분되며, 지역의 마을에서 운영

11) <http://blog.naver.com/jbwooo/220568123078>. 접속일자 2016.09.05

12) Hokkaido, Tohoku, Kanto, Chubu, Kinki, Chugoku, Shikoku, Kyushu, Okinawa를 말한다.

하는 캠핑장도 있다. 따라서 캠핑장의 시설과 규모, 경관 및 입지, 환경 등은 캠핑장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립과 주립 캠핑장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국립 혹은 주립 공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용과 편의시설 제공에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이다. 반면, 사설 캠핑장의 경우에는 도심 외곽이나 아웃도어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호수나 강가 주변으로 많이 입지해 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국립이나 주립 캠핑장에 비해 수준이 낮을 수 있으나, 사설 캠핑장에서 제공되는 편의 시설 및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매우 경쟁력이 높다. 야영객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캠핑장이 운영 중이며, 그 시설과 서비스도 매우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국립공원인 Canadian Rocky 안에 33개의 캠핑장과 4,596개의 캠프 사이트가 있으며, 한 사이트에 2명 정도만 머무른다고 해도 약 9,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숙박 가능하다.<sup>13)</sup> 캐나다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캠핑장인 Canadian Rocky 캠핑장은 단순 편의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 사이트도 하나의 객실이라는 생각으로 이용객들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사이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캠핑장 시설 수준도 매우 높다<sup>14)</sup>.

위와 같이 야영장의 그 개념이 각 나라 및 각 도시마다 상이하므로 관계법령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의 빠른 안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검토

현재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비록 유사한 개념이나 각 개별법마다 고유의 입법목적이 있어 이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견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한 형태의 야영장들이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상이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상이한 설치기준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게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객에게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야영장과 관련하여 각종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처음으로 안전·위생에 대한 정부부처 통합기준이 마련되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사는 짧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과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3) <http://www.travelalberta.com> 접속일자 2016.10.01

14) <http://www.canadianrocky.com> 접속일자 2016.10.25

그러나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만한 부서와 전문 인력, 규격화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제도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영장의 안전, 위생,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은 이를 경영하는 오토나 운영자의 경영 철학이나 방식에 따라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용객들의 캠핑 경험과 질, 안전과 위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캠핑 트렌드가 일시적인 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전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과 같이 캠프장 내에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캠프 전문 인력을 양성 및 교육하며 이를 돕는 전담 기관을 육성한다면 아웃도어 캠핑은 지속가능한 여가관광의 형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야영이용객 및 관련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 및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캠핑 인구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캠핑과 관련한 이용객들의 인식 수준 및 올바른 캠핑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문 협회나 기관의 부재, 전담 부처와 관련 법제도의 미비, 캠프 전문 인력 및 양성 부재,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와 야외 활동, 프로그램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 독특한 야영 형태로서 ‘텐트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글램핑(Glamping)<sup>15)</sup>’이나 ‘사실상 고정형 차량 숙박형태인 캐러번(Caravan)<sup>16)</sup>’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변형 형태의 불법 시설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도적 개선노력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5) 캠핑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Brooker & Joppe, 2013), 캠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들(예: 캠핑 장비 구비, 열악한 잠자리, 화장실 및 샤워시설 이용 불편함 등)을 제거하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캠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숙박시설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Boscoboinik & Bourquard, 2011).

16) 오토캠핑(auto camping)은 자동차(automobile)와 캠핑(camping)이 결합된 용어로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캠핑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캠핑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김세천 외, 2008). 오토캠핑은 자연 속에서 쉽고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텐트 캠핑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불편한 잠자리와 교통 및 이동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토캠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자동차에 주방이나 침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동력 엔진이 있는 캠핑카 형태와 동력이 없이 차량 뒤에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형, 즉 캐러번(caravan)이라 할 수 있다. 카라바닝(caravanning)은 카라반(caravan)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카라반을 이용한 캠핑을 의미한다(최연화 외, 2012).



### Ⅲ. 제도적 개선

#### 1. 제도적 개선노력

##### 1) 제도적 주요 개선내용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29.][대통령령 제25674호, 2014.10.28.일부개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개정의 특징은 지금까지 ‘일반야영장업’을 처음으로 조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전까지는 ‘자동차야영장업’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하자 기존의 ‘자동차야영장업’외에 ‘일반야영장’을 별도로 규정<sup>17)</sup>한 것이다. 개정 이유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야영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야영장업’ 외에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규모 등 그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야영장업’은 ‘자동차야영장업’과의 공통기준<sup>18)</sup>외에 개별적 기준으로서,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시행 2015.8.4.] [법률 제13127호, 2015.2.3., 일부개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개정의 특징은 지금까지 시행령 차원에서 보호되던 ‘야

1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및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을 공통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장업'을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야영장 인명피해가 지속되자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위생기준 준수 및 미등록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감독,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해당 여행자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에게 안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으로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sup>19)</sup>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sup>20)</sup>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sup>.

끝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8.4., 일부개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본 개정의 특징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 8.4.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시에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 한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야영장업자에게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내용을 세분화 하였다.

한편 현재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기준, 전기사용 기준,

19)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야영장업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0)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동법 제83조제2항 ②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1)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가스사용 기준, 대피관련 기준,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및 위생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준수 사항

| 구분    | 종 전(2015.0617)                                                                                                                                                             | 현 행                                                                                                                                                                              |
|-------|----------------------------------------------------------------------------------------------------------------------------------------------------------------------------|----------------------------------------------------------------------------------------------------------------------------------------------------------------------------------|
| 기준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영장업 등록제도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권장기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제화하여 적용하는 의무기준</li> <li>※ 위반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li> </ul>                                                                   |
| 화재 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막 재질 규정 없음</li> <li>고정형 시설의 안전기준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염 처리된 천막 사용 의무화</li> <li>시설별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 설치, 식별·탈출이 용이한 출입구 규정</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식 천막 내 화기제한 규정 없음</li> <li>사이트 1,500㎡ 마다 소화기 비치</li> <li>숯·잔불 처리시설 관련규정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식 천막 내 전기·가스·화기 금지</li> <li>단, 총사용량 600와트 이내 예외</li> <li>사이트 100㎡(2개소)마다 소화기비치</li> <li>숯·잔불 처리시설 별도공간에 마련, 소화기 및 방화사·방화수 비치</li> </ul> |
| 전기·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높이(50cm이상 권장) 방수형 단자함에 누전차단기 설치</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용기 설치 규정 부재</li> <li>LPG 가스통 반입제한 규정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용기 설치장소, 보관방법 규정</li> <li>LPG 가스통 반입·사용금지</li> <li>단, 13kg 이하 소형</li> </ul>                                                             |
| 대피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성기 등 안내방송설비 구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방송시설 또는 출력 10W, 가청거리 250m 메가폰 구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대피계획 수립 의무 없음</li> <li>환자 후송대책 수립 의무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라 조치 의무화</li> <li>환자 발생시 후송대책에 따라 조치</li> </ul>                                                                                |
| 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없음</li> <li>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제재 없음</li> <li>사고발생시 보고의무 없음</li> <li>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없음</li> <li>야영장 내 차량 30km/h 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부여</li> <li>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이용제한 조치</li> <li>사고발생시 등록기관 보고 의무화</li> <li>매년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li> <li>야영장 내 차량 20km/h 서행</li> </ul>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 재정리

## 2) 제도의 문제점

각종 야영장과 관련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부처 합동<sup>22)</sup>으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유사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부처가 없었고, 각 개별법마다 고유의 입법목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

22)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합동으로 「정부 합동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2015.06.17.」를 발표하였다.

기 위한 조치로서 비록 등록 기준 및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안전측면에서는 기존에 대비할 때 큰 진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설치 기준은 여전히 상이하므로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게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임야 및 하천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백팩킹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야영을 즐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텐트 내에서 가스나 전열기구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타당한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 IV. 결론 및 시사점

### 1.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행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야영장 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재 안전을 이유로 이동식 천막 내 전기·가스·화기가 금지 되므로 계절적으로 본다면 일교차를 고려할 때 일년 중 극히 일부 기간에만 야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LPG관련 사고는 이용객들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LPG 용기 규제로 인하여 이용객들은 취사를 부득이하게 숯, 일반 석유제품 등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요컨대, 야영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4계절이 뚜렷하고 편리성 중심의 국내 야영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정책은 야영장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대다수의 이용객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금지에서 관리로의 전환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듯 야영장 인명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텐트 내 난로 폭발 등이 원인인

있다는 이유로, 천막 내 전기 가스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사용의 이유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즉 난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현장에 적합한 연료를 이용하여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환풍 시설의 구비나 정격 사용량에 대한 개도를 통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난방기구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9월부터 4월까지의 최소 방 온도가 68화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제품이 아닌 난방기구들은 환기 배관 또는 환기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외부로 열기나 매연 등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Florida, Rule : 64E-15.009 Recreational Camp Standards)<sup>23)</sup>.”

최근 관광객들은 단순관광의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야영이용객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 보다는 일단 억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여전히 현실을 제도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24)</sup>.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등록 기준과 운영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인 이유로 등록(인허가 포함)과 감독은 현행과 같이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되, 그 기준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시장진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개정방안은 ‘금지’보다는 허용하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관리’로 기본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고 야영할 수 있는 개별 환경을 고려할 때, 야영가능일수는 30일 내외이므로 텐트 내 난방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 자체를 없애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과 거리가 먼 해법인 것처럼, 급속히 성장해 나가는 야영시장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금지’ 보다는 허용

23) Heating appliances shall be provided in all non-transient shelters to maintain a minimum room temperature of 68 degrees Fahrenheit during the months of September through April.; Heating appliances, other than electrical, shall be provided with a vent pipe or vent connected to the appliance and discharging to the outside air or chimney. [https://www.flrules.org/Gateway/View\\_notice.asp?id=8063821](https://www.flrules.org/Gateway/View_notice.asp?id=8063821), 접속일자 2016.10.05

24) 안전을 중심으로 한 금지 중심의 ‘정부부처 통합안’은 야영 이용객과 사업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초래하였다.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600와트이내 허용 및 13kg미만의 LPG허용 등으로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하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당해 규정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하면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야영장업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한 개의 관계부처에서 통일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반영이 용이하고 이용객과 사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구체적인 야영장의 안전 예방과 관련한 활동 및 화재 예방 캠프 도구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 강원발전연구원 (2013). 글램핑과 강원도
- 김세천 · 서응철 · 박봉주 · 최형근(2008). 오토캠핑장 이용에 관한 의식 및 이용실태 조사연구. 『한국산림유향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1-35.
- 김학준 · 이동환 (2016). 캠핑에 관한 연구 트렌드 분석. 『관광레저연구』, 28(7), 223
- 윤혜진·곽기영·김창식(2016). 카라반 고객의 속성평가, 이미지 및 재방문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8(9), 229-247.
- 이관표 · 권상미 (2013). 오토캠핑장 선택속성에 따른 경쟁력 평가척도 개발. 『관광레저연구』, 25(3), 38.
- 최연화 · 정찬인 · 이승곤(2014). 오토캠핑 참여동기 유형에 따른 행태분석. 『관광연구』, 29(1), 41-60.
- 최연화 · 정찬인 · 이승곤(2015). 오토캠핑장 목적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레저연구』, 27(3), 17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_\_\_\_\_ (2016). 신종야영장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_\_\_\_\_.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
- \_\_\_\_\_. 보도자료 2016.06.14..
- 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5.06.17.)
- Brooker, E., & Joppe, M. (2013). Trends in camping and outdoor hospitality: An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3(4), 1-6.
- \_\_\_\_\_ (2014). A critical review of camping research and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0(4), 335-351.

Bultena & Taves, M.J. (1960). Tenting on a park campground. *Conservation Volunteer*, 23, 60-64.

Mcintosh, P. C. (1963). *Sports in Society*. London : C. A. Watts.

Mohd, A., Yaman, R. A., Keat. T. C. & Wai. (2005). Campers' characteristic, recreation activities and related forest camping attributes in Shah Alam Agriculture Park, Selango. *Journal of Applied Sciences* 2005 Vol. 5 No. 9 pp. 1546-1552.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_\_\_\_\_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_\_\_\_\_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항

\_\_\_\_\_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_\_\_\_\_ 제83조(벌칙) 제2항

\_\_\_\_\_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

\_\_\_\_\_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

\_\_\_\_\_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목적)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https://www.flrules.org/Gateway/View\\_notice.asp?id=8063821](https://www.flrules.org/Gateway/View_notice.asp?id=8063821)

<http://blog.naver.com/jbwooo/220568123078>.

<http://www.travelalberta.com>.

<http://www.jnto.go.jp/eng/attractions/rest/outdoor>.

2017년 01월 21일 원고 접수

2017년 02월 21일 수정본 접수

2017년 02월 25일 최종 수정본 접수 및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필